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
- 1. 운영위원회 - 10명
- 2. 총무재무위원회 - 9명
- 3. 시민보건위원회 - 9명
- 4. 도시건설위원회 - 12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	제 2 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.
1. 운영위원회 - 9명	1. 운영위원회 - 10명
2. 총무재무위원회 - 10명	2. 총무재무위원회 - 9명
3. 시민보건위원회 - 10명	3. 시민보건위원회 - 9명
4. 도시건설위원회 - 10명	4. 도시건설위원회 - 12명

결산검사위원선임(안)

○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 '91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- 근거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25조
 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
 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

○ 주 문

- 결산검사위원수: 의원 3인
- 선임방법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
※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 125 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

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 46 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당해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, 그 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